

2006. 9. 6(수) 10:00

제13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심 사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 【 목 차 】

1.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3.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4.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5.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3차) ..... 19
6.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의안번호 제2006 - 41호>

#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8.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8. 22.

## 2. 개정이유

-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결정사항 중 폐지된 내용 삭제와, 체계가 맞지 않는 각 호의 순서를 일괄정비 개정.
- 지방세의 결손처분시 건당 5백만원이상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 체납결손 처분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골자

- 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한 사항을 신설하고(안 제7호), 이와 관련된 현행 3개호를 삭제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함.
  - 지명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13호)
  - 거창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삭제(현행 제16호)
  - 거창군지도방문조정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한 지도방문조정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삭제(현행 제17호)

- 기능이 상실된 결정사항 3개호를 삭제함.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현행 제4호)
    - 1972년도 제정된 조례로 현실과 부합되어 삭제
    - 이의신청은 각 개별법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가능하며, 행정심판의 심의는 도 심의사항임.
  -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현행 제14호)
    - 2000. 7. 19일 신설된(현행 제16호)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
  -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현행 제15호)
    - 2005. 1. 15일 조례 폐지되어 심의사항 삭제
- 건당 5백만원 이상 채납자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호).
  - 경상남도에서 지방세 채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당 5백만원 이상 결손처분시 시군조정위원회 심의 권고사항으로 채납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
- 신설 및 삭제로 체계가 맞지 않는 각 호의 순서를 재배열함

#### 4.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내용 중에 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 및 체계에 맞게 일괄 정비함과, 건당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 채납액의 결손처분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 채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의 세부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안 제3조(결정사항)중 제4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삭제 건은 이의신청은 각 개별법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고, 행정심판은 도의 심의사항으로 군에서는 의견제출만 가능한 것으로써 1972년도 제정된 조례로 그 동안 현실과 불부합 되고 있는 부분을 금번 개정시에 삭제하는 것이며,

- 제14호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삭제 건은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의 내용과 현 16호와 중복된 부분으로 삭제하는 것이고,
- 제15호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삭제 건은 조례명이 거창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조례로 개정되면서 폐지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 제13호 지명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과 16호 거창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및 17호 거창군지도방문조정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한 지도방문조정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의 3건은 개별적 조례, 규칙, 규정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을 또다시 결정사항에 나열하기 보다는 하나로 통합신설하려는 것이며,
- 제18호 내용중 “보안업무 심사위원회”을 “보안 심사위원회”로 현실에 맞도록 자구 수정한 것이고,
- 제9호 건당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건은 현행 결손처리(행방 또는 재산조사·확인→증빙서류 구비→결손) 절차를 건당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한해서는 시군조정위원회 심의후 처리토록 결손처분 처리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행정

자치부와 경상남도에서 권고된 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 사료되며,

- 제7조의 2(정책자문단운영위원회)와 제8조(실비변상)의 내용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은 기존 제7조의 1을 규정에 맞도록 조의 번호를 개정한 것과 개정된 맞춤법에 맞게 낫표와 띄어쓰기를 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 조례와의 중첩여부 및 조례안 개정시에 제반사항 등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8.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8. 22.

2. 개정이유

- 2005년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담당 부서 이관 및 담당 명칭 변경
- 기존 “정보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개인정보의 보호 제도에 관한 사항이 대폭 규정된 상위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를 체계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앞뒤를 낫표(「」)를 사용하여 구분하게 함(안 제1조).
  -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 촉진 기본법」”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개정

- '05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담당 부서 명칭 변경(안 제10조 제3항).
  - “정보통신담당주사”를 “정보화담당주사”로 개정함.

#### 4.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2005년 5월 “일 중심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화기능을 기획분야의 부서로 이관, 업무담당 명칭이 변경됨과, 기존 “정보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개인정보의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상위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를 체계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으로,
- 동 조례안은 조직개편시 부서이관 담당명칭 변경 및 상위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형식이나 체계를 준수, 개정된 법률명으로 변경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06 - 44호>

#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8.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8. 22.

## 2. 개정이유

-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안 제9조의 2 신설).
  - 대상 : 채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결손처분액 + 채납액)이상인 고액 상습채납자
  - 공개 대상자 심의요청 절차 등 : 규칙으로 정함.

## 4.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개정조례안 제9조 2항의 신설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코자, 개정된 「지방세법」 제69조의 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의 2항의 근거와 2006년 3월 7일 경상남도로부터 본제도의 운영방안 통보(세정과-2355호)에 의해 조문을 신설하는 후속적인 조치로써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동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06 - 45호>

# 거창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8.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8. 22.

### 2. 개정이유

-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확대함(안 제2조). ——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을 포함
-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 및 명확히 함(안 제3조).
  - 현행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던 것을 경과 기간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등지급하도록 하였음.(1년경과 100분의 1, 2년경과 100분의 3, 3년이상 경과 100분의 5)

- 계약직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 신설함 (안 제4조).
- 징수포상금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거창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함(안 제5조).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징수포상금지급신청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안 제7조).

#### 4.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그 동안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운영에 있어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한도 및 지급심사 방법 등이 시군별로 상이하고, 감사원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인 체납세 징수노력과 관계없이 과년도 체납액(미수액) 전체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의 부당지급 사례와 포상금 지급시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공적심사에 대한 신뢰성 부족사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였으며 동 조례안이 시행 될 시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 기대됨.
-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 안 제2조(지급대상)중 제1항 제1호에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신설한 것은 그동안 일상적인 징수업무관련 체납액 징수시에 지급하던 포상금을 특별공적(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 안 제3조(지급기준)과 제4조(지급한도)를 신설한 것은 현행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3%, 2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5%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차등지급토록 재조정(1년경과: 1%, 2년경과 2%, 3년이상 경과: 5%)한 것이며, 지급한도를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임.

- 안 제5조(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를 신설한 것은 징수포상금 지급시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공적심사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거창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한 것임.
- 이밖에도 제6조(대장비치), 제7조(지급신청), 제8조(지급) 및 제9조(환수) 등은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필요한 조항으로써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과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신청방법, 지급방법, 환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써 차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사료되었음.
- 따라서 동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제3차)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8.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8. 22.

##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가조보건지소 이전신축 및 위천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

## 3. 주요골자

### 가.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sup>2</sup>/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지목	수량	예정금액	비고
취득	건물	가조면 마상리 345-3		건물	351	527,608	가조보건지소
	토지	당초	위천면 장기리 522-4	답	1,555	90,000	위천소방파출소
		변경	위천면 장기리 509	답	2,509	155,000	

## 나.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취득대상 목록

(단위 : m<sup>2</sup>,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1	건물	가조면 마상리345-3	351	527,608	2006	이전 신축	거창군	
2	토지 (답)	위천면 장기리 509	2,509	155,000	2006	장소 변경	거창군	공시지가 ⇒59,463

### 4. 검토보고 요지

#### ◆ 가조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 현 가조면 보건지소는 1990년 건립되어 운영해 오고 있으나, 천정누수 등 건물이 노후되고 건물협소 등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위치를 마상리 345-3번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창군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본 사업은 2006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확정되어, 현 168m<sup>2</sup> 규모의 노후한 보건지소에서 면사무소, 농협등 유관기관이 연접한 기 확보된 균유지(대지)에 지상 2층의 351m<sup>2</sup>로 건물을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소요사업비 527백만원 중 건축비(국비 318백만, 도비 159백만)는 확보되었으나, 군비(부대사업비 등) 50백만원을 '06년 제1회 추경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며, 보건복지부[도 보건위생과-37511('05.12.30)대상기관 확정 및 도 보건위생과-23641('06.8.11)보조금 교부결정]의 대상지 선정 협조에 의한 것으로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본 사업이 완료되면 면지역 중 유일한 의약분업지역으로 상주인구

(4,605명) 및 보건기관 이용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행정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시설확장·개선 등을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봄.

-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편성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5년 9월 12일 '06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지(가조보건지소,아주보건진료소)가 선정·신청되었으나, 사업 확정 통보(국·도비 내시)가 지연됨에도, 사전에 예측하여 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200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조속히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바람직 하나, 향후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위천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변경(구입)

- 위천소방지서는 본서와 15km이상 떨어져 있어 소방행정추진에 취약하여 풍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현 소방지서를 소방파출소로 승격코자 파출소 부지를 군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 6일 제2차 정례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아 '06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90,000천원을 편성 추진중 당초대상지가 대형소방차량 통행등 소방파출소 이전부지로 부적합하여 거창소방서와 업무협의 및 관계자 간담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 신축부지를 변경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본 사업의 변경 필요성과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선정부지(위천면 장기리 509번지, 470평)는 도로와 이격되고 진입도로 폭(4m)의 협소 등 소방취약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대형소방차량의 출동용이 및 시가지면모 쇄신 등을 위해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거창소방서에서 도로와 연접한 변경부지(위천면 장기리 509번지, 759평)에 도비 6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지상 2층(150평)의 소방파출소(금년중 소방지서→ 소방파출소로 승격 확정)를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부지 위치변경에 따른 총 부지 매입비 155,000천원(기확보 90,000천원) 중 부지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부족)예산 65,000천원을 '06년 제1회 추경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며,
- 변경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확인 되었으며, 기타 범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건축면적에 비하여 다소 부지면적이 과다하나, 주요 도로 및 유관 기관과 연접하여 위치적으로 양호하며, 본 사업이 완공되면 장래 시가지 조성 및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 효율적인 지역 소방업무추진으로 주민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봄.
- 그러나 당초 소방파출소 건립부지였던 위천면 장기리 522-4번지 토지소유자 조동규(북상면 월성리 1205번지)씨와 사전 행정적 협의 과정에서 동의서 장구 등의 진행이 있었는데, 금번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논란의 소지에 대하여는 조치한 이전 사항이나 조치계획이 있는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소방관련 행정은 도에서 담당하는 사무로 종전 소방관련 시설건립시 부지는 해당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도에서

전액 부담하여 해당 시·군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건축의 선행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소방관서의 부지·건물의 관리 및 예산지원 등이 일원화 되도록 도의 관련부서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건의·협의 등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위천 소방과출소 매입부지는 건축면적에 비하여 다소 부지면적이 과다하므로 건립후 제반여건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일부 면적을 향후 여타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 예산 절감 등 공유재산 활용의 다목적에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주문함.

10.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06 - 46호>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8.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8. 22.

### 2. 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제정 2005. 12. 23, 법률 제7739호)이 공포되고,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사항을 추가함 (안 제1조).
- 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기능에 추가로 신설함 (안 제2조1항 제5호).
- 다. 대표협의체 임명직 위원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3조 제2항).

- 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항, 제7항).
- 마.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부군수에서 군수로 조정되어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 4항).
- 바. 회의록 기록·작성시 의결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0조).

#### 4.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긴급복지 지원법」이 2005. 12. 23일 법률 제7739호로 공포되고, 2006. 3. 24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의 세부개정 내용을 심사한 결과
  - 안 제1조 목적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추가한 것은 동 조례안의 제정관련 상위법령을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 안 제2조 제1항 제5호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로 신설함은 관계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삽입한 것이고
  - 안 제3조 제2항 내지 제7항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면서 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관련조항을 업무 흐름의 중요도에 따라 재배열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 안 제9조 제4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협력체로,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개별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의 상위 심의기구임을 들어 사회복지분야 각종 위원회의 장이 자치단체장임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역할관계와 위원장간의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에서 금번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자치단체장으로 하도록 공문시달되어 부군수에서 군수로 조정, 현실에 맞도록 정비한 내용이었음.

- 기타 제10조의 회의록 기록·작성시 의결사항과 제13조의 공청회 및 세미나를 공청회 또는 세미나로, 제14조의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수정하는 것은 법령문의 올바른 띄어쓰기와 현실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